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4178

발의연월일: 2021. 12. 30.

발 의 자: 김주영・김경만・노웅래

박홍근・송재호・윤건영

윤재갑 • 이용우 • 임호선

정일영 · 최인호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「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」을 발표(2020. 12.)하면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실현하기 위하여실시간 소득을 파악하고 인별 소득정보를 관리·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음.

이에 일용근로소득의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각각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제출하여왔던 것을 매 월별 제출하도록 「소득세법」이 개정(2021.7.1.시행)되었고, 최근에는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도 반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.

이와 같이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(이하 "지급명세서등"이라한다)의 제출주기가 단축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납세협력의무에 따

른 업무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바,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소규모 사업자(대리하는 세무사 등을 포함)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소득파악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4조의5(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(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 지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)을 지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(이하 이 조에서 "지급명세 서등"이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 규모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제출의무자"라 한다)가 직접 「국세기 본법 .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(이하 이 조에서 "국세정 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(「소 득세법 . 제1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는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 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각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 별로 연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액으로 하고,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- 1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: 지급명세서
- 2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득: 간이지급명세서
- ②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(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,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경우(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해당 세무사의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각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별로연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액으로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 00만원(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750만원)으로 한다.
- ④ 세액공제의 적용, 신청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 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4조의5(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(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)을 지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(이하 이 조에서 "지급명세서(이하 이 조에서 "지급명세서(이하 이 조에서 "지급명세서등"이라 한다)를 제출하여야하는 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(이하 이 조에서 "제출의무자"라 한다)가 직접 「국세기본법」 제2조제1 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(이하 이 조에서 "국세정보통신망(이하 이 조에서 "국세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 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는 제출 건수 등을 고려

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각 지급명세서등의제출의무자별로 연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액으로 하고, 3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없는 것으로 한다.

- 1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 로소득: 지급명세서
- 2. 「소득세법」 제164조의3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: 간이지급명세서
- ② 「세무사법」에 따른 세무사(「세무사법」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,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「공인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

(「소득세법」 제16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법 제164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 다)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의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.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각 지 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별로 연간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 만원을 공제액으로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 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 도액은 300만원(「세무사법」 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「공인 회계사법」에 따른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750만원)으로 한다. ④ 세액공제의 적용, 신청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